

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
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12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: 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발 의 자: 조영식 의원 외 8명
3. 개정이유

제339회 완도군의회 제2차 본회의(2026. 7. 14.)에서 완도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의회에 출석·

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실장, 담당관, 과장, 단장 → 과장(안 제2조제1항)

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

6. 예고기간 : 2026. 8. 12. ~ 2026. 8. 16.(5일간)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사운영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13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운영팀(전화: 061-550-5906)으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소			
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--

「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완도군의회 조례 제 호

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실장, 담당관, 과장, 단장”을 “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범위) ① 의회 또는 위원회 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 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	제2조 (범위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군수의 보조기관 중 <u>실장, 담</u> <u>당관, 과장, 단장</u>	2. ----- <u>과장</u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